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’18.6. 삼륜형 전기이륜차 및 승용·화물차에 초소형 자동차가 신설된 이후 급격한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현행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이륜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은 ‘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’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종분류에서는 삭제(시행규칙 별표 1)
- 나. 초소형화물차 생산이 가능하도록 바닥면적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(시행규칙 별표 1, 비교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국토교통부령 제 호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1호 이륜자동차의 소형란 및 중형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배기량이 100cc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인 것	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(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)인 것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별표 1 제2호의 비교 제1호가목 중 “그 밖에 특수용도형의 경영화물자동차”를 “그 밖에 초소형화물차, 특수용도형의 경영화물자동차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동차의 종류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제작·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.